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2019. 03

목 차

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1-4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1-4
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절차 및 방법	4-5
(1)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4
(2)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등의 자체 규정	4
(3)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4
(4) 2019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5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5-6
(1) 출제 전	5
(2) 출제과정	6
(3) 출제 후	6
(4) 금년도 개선 사항 요약	6
라. 문항 분석 결과 요약	7-8
(1)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7
(2)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면접고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7
(3)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기타 고사(체력측정) 내용	8
마.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9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9
(2) 2020학년도 입학전형 개선 노력	9
바. 부록	10-12
(1)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학칙	10
(2)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10-11
(3) 본 대학 고사 운영현황	12

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①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목적

- 공교육정상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였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업무 이행 필요

② 실시 근거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 공교육정상화법)」 제 10조 및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령(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5조

•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내용

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 ① 대학등의 장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 ② 대학등의 장은 제1항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제10조의2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③ 대학등의 장은 제2항의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 ① 대학등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대학등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11조(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 ①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 1.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2.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3.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⑤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⑧ 그 밖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등)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4조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 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제12조에 따른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교육관련기관에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교육관련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변경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가교육과정과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상 체육·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교과(군), 실과·제2 외국어·한문·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관련 내용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등(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학등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보고·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관련기관에 출입하여 선행교육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교원 징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교육공무원인 교육관련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 착오 또는 경과실(輕過失)에 의한 경우: 경징계

나. 고의 또는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경우: 중징계

2. 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육관련기관의 장: 해당 교육관련기관 장의 임면권자를 거쳐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①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 관련)

마. 법 제10조에 따른 입학전형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위반한 경우

1) 대학등의 장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른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2) 대학등의 장이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3) 대학등의 장이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해당 대학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지 않은 경우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한다.

③ 선행학습영향평가 실시 범위

-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제1항)
- 우리 대학의 경우, '면접고사'가 해당된다.

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이행 점검결과
대학별 고사 시행 관련 이행 사항 점검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해당없음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해당없음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해당없음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

(2)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등의 자체 규정

- 본교는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대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운영됨을 알림.
-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학칙 제4장 제14조의3)하고 있으며,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사항을 심의함.
-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 <바. 부록> 참조

(3)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 입학관리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현직 고등학교 교사를 외부위원으로 임명하여 구성함.
- 외부위원 구성현황

전체위원 중 외부위원 비율	22% (2명/전체9명)	
외부위원 구성비율	현직 고등학교 교사	100% (2명)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 2명 모두 일반교사로 구성됨

○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현황

연번	구분	소속	직위(급)	성명	비고
1	위원장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입학관리처장)	강성기	
2	내부위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교무처장)	김대현	
3	내부위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취업복지처장)	김학용	
4	내부위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산학협력처장)	최영수	
5	내부위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교수(기획홍보처장)	김남중	
6	내부위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간호학과)	안은경	
7	내부위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과학수사과)	송영일	
8	외부위원	동방고등학교	진학진로부장	이광일	현직 고교 교사
9	외부위원	동방고등학교	안전생활부장	최희규	현직 고교 교사
10	간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팀장(입학관리처 입학관리팀)	강병희	

(4) 2019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안내

일시	주요내용
2018. 9월 ~ 2019. 2월	대입전형 진행
3. 6(수)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안건 심의
3. 7(목) ~ 3. 26(화)	·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 다음 연도 대입전형 반영계획 수립
3. 27(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1) 출제 전

- 본 대학의 면접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지식과 관련 없는 인성중심의 면접으로 학과 지원동기나 관심도, 적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함
- 각 학과 및 계열에서는 면접고사 예상문제를 미리 준비하여 면접고사 실시 약 3주 전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선공개하고 안내하였으며, 지원자로 하여금 보다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면접고사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함.

항목	세부 기술 내용
고교 교육과정(필요시 교과서 등) 분석 작업의 충실도	해당없음
출제·검토위원회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 연수 실시 여부	해당없음
전년 대비 사전 연수 실시 횟수 등의 증감 정도	해당없음

(2) 출제과정

- 현재 면접고사 질문의 작성은 해당 계열 및 학과 교수들이 전담하고 있으며, 위원회 외부위원들을 통해 검토 및 의견을 받고 있다.

항목	세부 기술 내용
출제·검토위원 중 고교 교원 참여 비율	22% (일반고교사 100%)
고교 교원의 출제·검토과정에서의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	출제과정에서의 중간검토
출제·검토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개선 노력	전년도와 역할변화없음

(3) 출제 후

- 2019학년도 입시과정에서는 면접고사 문항의 출제 및 검토에 참여한 인원에 대하여 자체조사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출제·검토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조사하여, 향후 입시과정에서 반영토록 조치하였다.
- 2020학년도 입시과정에서도 2019학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출제·검토위원들에 관련하여 자체조사 설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목	세부 기술 내용
출제·검토위원 설문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각 계열 및 학과별 면접고사 예상질문 취합 시, 자체조사 설문도 동시에 진행하여 통계 및 개선사항 도출. 향후 입시과정에 반영.

(4) 금년도 개선 사항 요약

- 2018학년도와 비교하여 2019학년도 면접고사는 큰 틀의 변화 없이 진행되었음.

라. 문항 분석 결과 요약

(1) 문항 분석 결과 요약표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 번호
논술 등 필답고사			미 실시				
면접· 구술고사	일반전형 특별전형 정원외전형	전 계열 및 학과 (면접실시학과에 한함)	없음	없음	없음	○	해당 없음

※ 본 대학의 면접고사는 고등학교 교과 지식과 관련 없는 인성중심의 면접으로 학과 지원동기나 관심도, 적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함

(2)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면접고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① 평가항목

학과명	면접고사 실시 시기	평가항목
전 계열 및 학과 (면접실시학과에 한함)	수시모집 1차 수시모집 2차 정시모집 1차	(1) 인성 - 예절/복장/태도 - 성격 - 인생관/가치관 (2) 적성 - 학교/학과지원동기 - 전공이해/관심도 - 창의력/적극성 (3) 수학능력 - 문제파악능력 - 논리적 사고력/표현력 - 지적능력

② 평가기준

평가영역	영역배점	평가요소	평가기준
인성	100	1. 예절/복장/태도 2. 성격 3. 인생관/가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행이 단정하며 태도가 바른가? • 예의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평소 생활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가? •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적성	60	1. 학교/학과지원동기 2. 전공이해/관심도 3. 창의력/적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학과의 지원동기는 분명한가? • 본 대학에 재학의사가 있는가? • 지원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있는가? • 의지가 강하며 창의력과 적극성이 있는가?
수학능력	40	1. 문제파악능력 2. 논리적 사고력/표현력 3. 지적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 자기 생각을 충분히 전달하는가? • 지원전공과 관련한 수학능력은 충분한가?
계	200		

(3)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기타 고사(체력측정) 내용

학 과	내 용	비 고
경찰경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미터 왕복달리기 - 제자리멀리뛰기 - 윗몸일으키기 - 팔굽혀펴기 	
군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km 달리기 : 남(7분 29초), 여(9분) 이상 - 윗몸일으키기 : 남(2분당 49회), 여(2분당 34회) 이상 - 팔굽혀펴기 : 남(2분당 39회), 여(2분당 18회) 이상 	※ 체력측정 종목은 부서관 임관기준에 의거함

마.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 본 대학은 학생 선발에 면접고사를 활용하며, 면접고사는 인성·적성·수학능력 3개의 문항으로 나누어 실시함. 자기소개/학과지원동기/지원학과에 대한 기본지식/미래계획 등 면접고사에 있어서 기본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공교육정상화법 취지에 맞춰 전반적으로 고난이도의 교과 지식을 요구하거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질문을 제시하는 등의 선행학습을 유발할 만한 평가 내용은 없음.
- 경찰경호과와 군사과의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체력측정)이 있을 수 있으나 입학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배점)가 없음. 특히 군사과의 경우 체력측정의 종목들이 현재 부사관 임관기준과 같은 공식적인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2) 2020학년도 입학전형 개선 노력

- 2019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해 실시한 면접고사는 구술 심층 면접이나 문제 풀이식 면접이 아닌,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의 인성이나 가치관, 학과에 대한 관심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과정이었다.
- 2019학년도에 시행된 면접고사와 관련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결과, 선행학습을 유발할만한 요소 및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2020학년도 입학전형은 기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현 면접고사 운영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다.

바. 부록

(1)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학칙

학칙 제4장 제14조의3 (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3.24.)

(2)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및 대전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14조의3에 의거하여 본 대학교의 대학입학 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입학관리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7인 이내 외부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내부위원은 교무처장, 취업복지처장, 산학협력처장, 기획홍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③외부위원은 관련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입학관리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제3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별 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3. 자체영향평가 결과의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사무) ①위원회의 사무는 입학관리처 입학관리팀에서 관장한다.

②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등 기타 사무처리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입학관리팀장이 된다.

제7조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반영) ①자체영향평가는 입학전형이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모집시기 (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자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결과의 공시) 법 제 10조 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본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9조 (보충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3) 본 대학 고사 운영현황

고사유형	운영여부 (○/X)	등록인원(명)		비고
		수시모집	정시모집	
논술	X	X		
적성	X	X		
면접· 구술고사	○	1,370명 정원내전형 : 1,235명 정원외전형 : 135명	57명 정원내전형: 40명 정원외전형: 17명	1. 수시모집 : 간호학과, 임상병리과, 과학수사과, 물류유통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면접고사 실시 - 정원외전형 전문대졸이상전형은 면접고사 미실시함(단, 간호학과, 물리치료과는 해당전형 면접고사 실시) 2. 정시모집 : 면접고사 실시하는 10개학과 제외하고 면접고사 미실시 - 면접고사 실시 학과 : 식품영양과, 뷰티디자인계열, 식품조리계열, 도시건설과, 도시환경조경과, 전기과, 컴퓨터정보&스마트폰과, 세무회계과, 광고홍보디자인과, 스포츠건강관리과 - 정원외전형에서 면접고사 미실시함.(단,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전문대졸이상전형은 면접고사 실시) 3. 정시 자율모집은 면접고사 미실시로 포함하지 않음
실험고사	X	X		
교직적성· 인성검사	X	X		
신체검사	X	X		
실기고사	X	X		
기타	○	160명 (경찰경호과 80명, 군사과 80명)		체력측정(학과별 실시)